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3월 2일

회 사 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대 표 이 사 : 김 정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전 화) 1588-0100
(홈페이지)<http://www.idongb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총무파트장 (성 명) 김 현 호
(전 화) 02-3011-332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0기 정기)

1.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 오전 8시 3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보고

나. 결의 사항

- 제1호 의안 : 제50기(2016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내용 :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6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 방법

-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상용 (출석률: 100%)	안종태 (출석률: 87.5%)	김성국 (출석률: 100%)	이수휴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16.2.2	■부의사항 - 제4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안) 승인의 건	찬성	불참	-	찬성
		■보고사항 - 주요 추진 및 계획사항 - 제48기 중 이사회 의결건에 대한 결과보고 -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보고	-	-	-	-
2	2016.2.19	■부의사항 - 제49기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확정건의 건 - 동부캐피탈 신용공여 연장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보고사항 -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보고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제출 및 보고 - 감사실시 결과 보고 - 2015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보고	-	-	-	-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상용 (출석률: 100%)	안종태 (출석률: 87.5%)	김성국 (출석률: 100%)	이수휴 (출석률: 100%)
			찬반여부			
3	2016.3.18	■부의사항 -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0기 이사보수 집행(안) 승인의 건 - 동부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의 건 - 동부증권 후순위 회사채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 IFRS4 2단계 대비 기본 대응계획 보고 - 뉴욕지점 재난 대응계획 수립 보고	-	-	-	-
4	2016.6.17	■보고사항 - 2016.1분기 경영실적 요약 -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 - 2016년 CXO 보수 결정사항 보고	-	-	-	-
5	2016.6.30	■보고사항 - 'IFRS4 2단계 도입 준비를 위한 종합대응계획(안)' 보고	-	-	-	-
		■부의사항 - 동부캐피탈 신용공여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상용 (출석률: 100%)	안종태 (출석률: 87.5%)	김성국 (출석률: 100%)	이수휴 (출석률: 100%)
			찬반여부			
6	2016.8.22	- 2016.2분기 경영실적 요약 -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보고	-	-	-	
7	2016.10.28	■부의사항 - 지배구조내부 규범 제정 및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의 건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 계열공익법인 기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결과 보고 -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보고 -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U.S.Branch 자본증액 보고	-	-	-	-
8	2016.12.23	■부의사항 - FY2016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경영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 2016.3분기 경영실적 요약	-	-	-	-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상용 (출석률: 100%)	안종태 (출석률: 87.5%)	김성국 (출석률: 100%)	이수휴 (출석률: 100%)
			찬반여부			
		-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박상용 위원장 이수휴 위원 안형준 위원	2016.2.19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이 사회보고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이사회 제출의 건 - FY2015 연간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 - 감사보고서 이사회 제출의 건	전건 가결
	박상용 위원장 김성국 위원 안형준 위원	2016.3.18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가결
		2016.4.18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가결
		2016.6.17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가결
		2016.12.23	-2017년 감사계획 심의의 건	가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이수휴 위원장 박상용 위원 안종태 위원	2016.2.19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김성국 위원장 박상용 위원 안종태 위원	2016.3.18	-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위험관리 위원회	김정남 위원장 이수휴 위원 박상용 위원	2016.2.2	-FY2016 리스크관리전략(안) 승인의 건 -FY2016 파생금융거래전략(안) 승인 의 건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전건 가결
	김정남 위원장 박상용 위원 김성국 위원	2016.3.18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보고사항>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FY2015.12월 리스크 주요지표 모니터링 보고 -FY2015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2016.8.22	<보고사항> -FY 16.6월 자본적정성평가 결과보고 -만기보유증권 계정 재분류 보고 -FY 16.6월 리스크 주요지표 모니터링 보고	-
		2016.12.5	-FY 16 장기 재보험운영전략 변경(안) 의 건	가결
		2016.12.23	-FY 17 위험관리전략(안) 승인의 건 -위험관리기준 개정(안) 승인의 건	전건 가결
보수위원회	안종태 위원장 이수휴 위원 안형준 위원	2016.2.19	-2015년 성과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안종태 위원장 김성국 위원 안형준 위원	2016.3.18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16.12.23	-임원보수규정 제정 <보고사항> -CXO 장기성과 평가 결과 보고	가결
내부거래위원회	안형준 위원장 박상용 위원 안종태 위원	2016.2.19	-동부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 연장의 건	가결
		2016.3.18	-동부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의 건 -동부증권 후순위사채 매입의 건	전건 가결
		2016.3.18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16.8.22	-동부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 연장의 건	가결
		2016.10.28	-계열공익법인 기부의 건	가결
경영위원회	김정남 위원장 안형준 위원	2016.1.13	-지배인 선/해임 및 변경의 건	가결
		2016.3.10	-신한은행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의 건 -지점(보상부) 이전의 건	전건 가결
		2016.6.9	-일중차월 갱신의 건	가결
		2016.8.22	-지점(사업단) 이전의 건 -지배인 해임 및 변경의 건	전건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016.10.6	-지점(보상부) 이전의 건 -지배인 변경의 건	전건 가결
		2016.12.8	-지점(사업단) 갱신의 건 -일중차월 신규 개설 및 갱신의 건	전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3	6,000,000,000	127,566,670	42,522,220	-

주)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5인)에 대한 총보수 승인 금액이며, 지급총액은 2016년(1월~12월)에 지급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국내 손보시장에는 30개의 보험사가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개 국내일반손보사와 2개 국내전업손보사, 10개 외국손보사 등 22개 보험사는 원수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8개 손보사는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손해보험협회 분류기준)

2016년 손해보험업계는 원수보험료 73.3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비 2.7%의 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보종별로는 자동차보험이 16.4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비 9.4% 성장을 나타내었고, 장기보험이 전년비 0.5% 성장한 50.5조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일반보험은 6.4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비 3.7%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보험종목별 비중을 보면, 자동차보험 22.4%, 장기보험 68.9%, 일반보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13개 손해보험사 기준 회사 자체 추정)

<참고> 최근 5년간 국내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단위:조원,%)

구분	FY'12	FY'13	2014	2015	2016(추정)
시장전체	62.9	48.9	67.8	71.4	73.3
(G/R)	12.9	3.9	4.7	5.3	2.7

주1) 現 13개 국내손해보험사 기준임

주2) FY'13('13.4월~12월) G/R은 FY'12. 3분기 누계('12.4월~12월) 대비 수치이며, FY'14 G/R은 CY'13('13.1월~12월) 대비 수치임.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16 사업년도에 12조 92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비 5.3%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조 9,876억원으로 전년비 15.5% 성장하였고, 일반보험은 10,138억원으로 전년비 1.5% 성장하였습니다. 당사 원수보험료의 66.9%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은 8조 910억원을 시현, 전년비 2.4%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비 710억원이 증가한 △3,101억원을 시현하였으며, 투자영업이익은 70억원 증가한 9,854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575억원 증가한 4,70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총자산은 34조 2,086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조 6,4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핵심입니다

2) 시장점유율

'16.11월말 기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종목별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분		자동차	장기	일반	합계
'16.11월말	동부	18.1	15.8	15.2	16.3
	삼성	29.3	23.6	20.6	24.6
	현대	19.1	16.3	16.4	17.0
	KB	12.4	12.7	13.8	12.7

주) 現 13개 국내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분	'16.11월말	2015	2014
동부화재	16.3	16.1	15.8

구분	'16.11월말	2015	2014
삼성화재	24.6	24.9	25.6
현대해상	17.0	17.0	16.5
KB손보	12.7	12.8	13.0
메리츠화재	8.1	7.9	7.7
한화손보	6.7	6.4	6.3
흥국화재	4.5	4.7	4.5
농협손보	4.1	3.9	4.0
롯데손보	3.0	3.1	3.0
MG손보	1.4	1.3	1.3
약사다이렉트	1.1	1.1	1.1
현대하이카다이렉트	-	0.7	0.7
더케이손보	0.6	0.6	0.5
카디프손해보험	0.0	0.0	0.0

주1) 現 13개 국내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주2) '15.6월,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현대해상으로 합병됨

주3) '14.7월, BNP파리바카디프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인수 후 카디프손해보험 출범

3) 시장의 특성

국내 (원수)손해보험시장은 상위 4개사가 원수보험 시장의 약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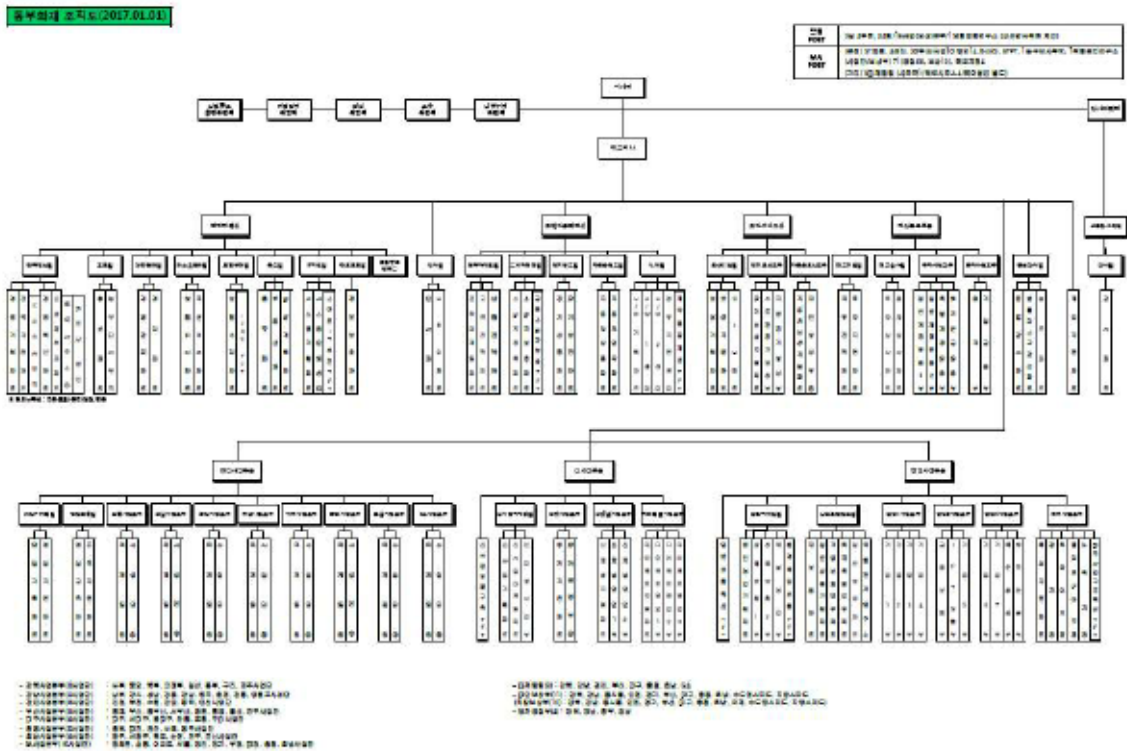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활성화가 지속되어 전체 자동차보험 중 온라인시장의 비중이 32.8%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당사의 경우 '16년도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18.6%를 점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험은 보장성 인보험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의 증가세 지속과 안정적 계속보험료 유입이 유지됨에 따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공사이율 하락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역신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 판매채널은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전속설계사/대리점과 더불어 여러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대리점(GA)과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 등 다양한 채널이 성장

하고 있습니다. 전통채널과 일반대리점 등의 대면채널은 보장성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컨설팅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 직판채널도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일반보험은 보험사 영업사원과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당사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화재 조직도(2017.1.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 III.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연결자본변동표 ·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아래 연결/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 기준>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0 기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49 기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0 기 기말	제 49 기 기말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1,099,491,347,588	1,918,970,700,272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250,746,766,928	1,357,215,134,538
3. 매도가능금융자산	20,932,177,426,314	13,284,677,757,972
4. 만기보유금융자산	-	4,366,301,395,635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12,640,506,552,895	11,016,777,102,645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31,100,930,670	16,756,717,330
7. 관계기업투자주식	249,159,697,306	259,428,135,973
8. 유형자산	363,237,090,459	364,401,413,910

과 목	제 50 기 기말	제 49 기 기말
9. 투자부동산	1,451,667,079,905	1,477,208,183,105
10. 무형자산	318,769,706,243	383,772,549,989
11. 재보험자산	734,984,059,544	761,840,743,800
12. 기타자산	2,091,410,653,887	2,106,597,762,602
13. 이연법인세자산	4,449,874,294	5,065,330,862
14. 당기법인세자산	28,440,671,076	24,799,851,230
15. 특별계정자산	3,667,298,115,916	2,674,577,828,760
자 산 총 계	44,863,439,973,025	40,018,390,608,623
부 채		
1. 보험계약부채	34,264,976,043,369	31,239,006,606,326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6,381,824,977	18,670,433,216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471,428,333,062	281,005,100,034
4. 확정급여부채	23,820,973,900	30,807,713,573
5. 기타부채	1,074,573,419,187	1,114,730,759,442
6. 이연법인세부채	336,790,049,654	308,661,095,269
7. 당기법인세부채	64,751,036,248	33,555,792,866
8. 특별계정부채	4,275,987,348,052	3,025,008,185,721
부 채 총 계	40,518,709,028,449	36,051,445,686,447
자 본		
1. 자본금	35,400,000,000	35,400,000,000
2. 자본잉여금	37,912,781,518	37,912,781,518
3. 자본조정	(29,655,475,800)	(29,655,475,8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46,487,395,655	612,164,891,899
5. 이익잉여금	3,579,518,761,548	3,149,987,667,178
(대손준비금 적립액)	(49,343,420,177)	(43,522,149,367)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702,064,321,767)	(642,073,297,158)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3,936,497,156)	(5,821,270,810)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69,296,339,329)	(59,991,024,609)
지배주주지분	4,169,663,462,921	3,805,809,864,795
6. 비지배지분	175,067,481,655	161,135,057,381
자 본 총 계	4,344,730,944,576	3,966,944,922,17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4,863,439,973,025	40,018,390,608,623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0 기	제 49 기
영업수익	17,067,164,333,879	15,956,238,881,684
1. 보험료수익	13,242,171,667,429	12,635,915,954,541
2. 재보험금수익	558,303,529,295	515,303,405,949
3. 이자수익	1,069,045,648,974	1,017,624,005,304
4. 금융상품투자수익	773,985,848,837	604,680,661,119
5. 외환거래이익	658,165,166,928	568,748,186,175
6. 수수료수익	11,762,527,479	10,849,404,405
7. 배당금수익	134,958,153,189	104,091,586,134
8. 기타수익	385,986,943,688	363,623,206,706
9. 특별계정수익	232,784,848,060	135,402,471,351
영업비용	16,341,083,340,324	15,390,019,270,168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3,029,303,169,483	3,201,501,116,225
2. 보험금비용	4,557,049,713,831	4,048,860,882,596
3. 환급금비용	3,472,602,854,335	3,400,694,791,888
4. 배당금비용	7,072,478,050	7,296,059,666
5. 손해조사비	124,111,089,476	120,671,080,982
6. 재보험료비용	780,081,556,931	801,771,442,806
7. 사업비	1,369,866,421,752	1,236,892,419,217
8. 신계약비상각비	1,042,212,095,184	924,940,548,314
9. 구상손실	2,451,301,079	2,171,833,626
10. 이자비용	17,632,994,554	15,092,919,854
11. 금융상품투자비용	865,017,406,203	879,343,981,041
12. 대손상각비	13,710,333,768	16,416,366,039
13. 외환거래손실	369,690,442,769	142,568,138,578
14. 자산관리비	93,805,143,574	82,659,346,533
15. 부동산관리비	8,656,523,891	14,203,350,208
16. 기타비용	355,034,967,384	359,532,521,244
17. 특별계정비용	232,784,848,060	135,402,471,351
영업이익	726,080,993,555	566,219,611,516
영업외수익	14,096,497,530	19,580,115,954
영업외비용	36,488,291,630	40,275,081,702

과 목	제 50 기	제 49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03,689,199,455	545,524,645,768
법인세비용	169,909,934,895	115,081,161,705
당기순이익	533,779,264,560	430,443,484,063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523,652,450,822	418,793,549,251
비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10,126,813,738	11,649,934,812
기타포괄이익	(53,585,055,160)	26,920,030,37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27,497,231,759)	1,607,217,427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이익	3,066,122,337	5,964,136,023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7,617,637,477)	1,611,509,10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14,604,204,291)	(24,543,003,317)
해외사업환산이익	15,118,849,326	50,370,521,667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	(16,862,835,172)	(742,065,367)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188,118,124)	(7,348,285,159)
총포괄이익	480,194,209,400	457,363,514,442
지배주주지분 총포괄이익	457,975,633,510	443,917,069,586
비지배주주지분 총포괄이익	22,218,575,890	13,446,444,856
지배주주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8,273	6,616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지배주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합 계		
2015.1.1(전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587,041,371,564	2,822,976,710,927	3,453,675,388,209	137,500,227,805	3,591,175,616,014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418,793,549,251	418,793,549,251	11,649,934,812	430,443,484,06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755,413,042	-	755,413,042	851,804,385	1,607,217,427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이익	-	-	-	4,631,541,140	-	4,631,541,140	1,332,594,883	5,964,136,023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	-	-	1,611,509,105	-	1,611,509,105	-	1,611,509,10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24,322,695,826)	-	(24,322,695,826)	(220,307,491)	(24,543,003,317)
해외사업환산이익	-	-	-	50,370,521,667	-	50,370,521,667	-	50,370,521,667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	-	-	-	(742,065,367)	-	(742,065,367)	-	(742,065,36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7,180,703,426)	-	(7,180,703,426)	(167,581,733)	(7,348,285,159)
총포괄손익 소계	-	-	-	25,123,520,335	418,793,549,251	443,917,069,586	13,446,444,856	457,363,514,44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91,782,593,000)	(91,782,593,000)	(4,295,760,000)	(96,078,353,000)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의 인식	-	-	-	-	-	-	14,484,144,720	14,484,144,720
2015.12.31(전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612,164,891,899	3,149,987,667,178	3,805,809,864,795	161,135,057,381	3,966,944,922,176
2016.1.1(당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612,164,891,899	3,149,987,667,178	3,805,809,864,795	161,135,057,381	3,966,944,922,176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523,652,450,822	523,652,450,822	10,126,813,738	533,779,264,56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38,955,771,116)	-	(38,955,771,116)	11,458,539,357	(27,497,231,759)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이익	-	-	-	2,381,044,245	-	2,381,044,245	685,078,092	3,066,122,337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	-	-	(7,617,637,477)	-	(7,617,637,477)	-	(7,617,637,47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14,567,158,065)	-	(14,567,158,065)	(37,046,226)	(14,604,204,291)
해외사업환산이익	-	-	-	15,118,849,326	-	15,118,849,326	-	15,118,849,32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	-	-	-	(16,862,835,172)	-	(16,862,835,172)	-	(16,862,835,17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5,173,309,053)	-	(5,173,309,053)	(14,809,071)	(5,188,118,124)
총포괄손익 소계	-	-	-	(65,676,817,312)	523,652,450,822	457,975,633,510	22,218,575,890	480,194,209,4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98,112,427,000)	(98,112,427,000)	(4,295,760,000)	(102,408,187,000)
비지배지분의 취득	-	-	-	(678,932)	3,991,070,548	3,990,391,616	(3,990,391,616)	-
2016.12.31(당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546,487,395,655	3,579,518,761,548	4,169,663,462,921	175,067,481,655	4,344,730,944,576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0 기		제 49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02,580,843,705		2,433,136,087,60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03,689,199,455		545,524,645,768	
수익 및 비용의 조정	2,846,141,538,176		3,101,353,293,469	
자산 및 부채의 변동	(1,568,244,399,004)		(2,249,210,401,724)	
이자수취액	1,097,565,272,914		1,044,789,183,408	
이자지급액	(12,645,753,064)		(13,040,907,466)	
배당수취액	135,000,177,472		108,326,822,944	
법인세납부액	(98,925,192,244)		(104,606,548,79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13,455,367,073)		(2,065,921,264,84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4,576,566,428,515)		(10,700,913,067,75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1,069,093,456,181		9,231,271,570,91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259,070,661,443)		(929,687,732,969)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회수	485,374,630,600		188,027,048,07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85,163,892,041)		(278,232,063,991)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392,177,277,845		562,243,633,37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56,776,872,000)	
사업의 취득	-		(8,232,502,126)	
유형자산의 취득	(21,811,135,759)		(63,301,152,505)	
유형자산의 처분	1,053,203,975		(20,188,522)	
투자부동산의 취득	(39,467,002)		(50,669,111)	
투자부동산의 처분 및 폐기	239,800,000		88,600,000	
무형자산의 취득	(18,486,557,478)		(8,495,897,330)	
무형자산의 처분	85,000,000		93,5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16,545,943,758)		(28,905,937,676)	
임차보증금의 감소	17,007,929,844		27,722,462,674	
복구공사로 인한 현금 유출액	(802,579,522)		(751,995,9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4,025,571,808)		(81,242,108,260)
차입부채의 순증가	8,927,760,053		16,646,524,402	
임대보증금의 증가	17,309,978,275		2,241,570,898	
임대보증금의 감소	(17,855,123,136)		(4,051,850,560)	
배당금의 지급	(102,408,187,000)		(96,078,353,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4,900,095,176)		285,972,714,500
환율변동효과		11,157,613,289		3,659,038,829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47,618,666,730		457,986,913,401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53,876,184,843		747,618,666,730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8개, 사업단 58개, 보상사무소 13개, 지점 372개의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73년 6월 28일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김준기	2,104	5.94	2,104	5.94
김남호	3,190	9.01	3,190	9.01
김주원	1,115	3.15	1,115	3.15
동부문화재단	1,770	5.00	1,770	5.00
동부화재해상보험(자기주식)	3,751	10.60	3,751	10.60
소액주주	23,470	66.30	23,470	66.30
합 계	35,400	100.00	35,4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기업은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의 지분을 제거함에 있어 취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 획득일 현재 각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이전대가인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 후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89년 4월 14일 설립되었으며 인보험 및 인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 및 이와 관련된 자산운용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145,004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48,32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캐피탈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캐피탈주식회사는 1995년 12월 8일 설립되었으며 할부금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62,01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1984년 2월 29일 설립되었으며 자동차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70천원 및 우선주자본금 999,93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제3보험 및 기타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씨에이에스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씨에이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보험관련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수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3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 및 보험 손해사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엠앤에스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엠앤에스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3년 2월 22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수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0,0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금융서비스주식회사의 개요

동부금융서비스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동부엠앤에스주식회사가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4년 1월 20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12,00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2 특수목적기업

연결기업은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위험과 효익 및 연결실체와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연결실체가 해당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특수목적기업의 영업 및 순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효익을 연결기업이 획득하게 되고, 연결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목적기업 또는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한 소유위험이나 잔여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특수목적기업은 54개입니다. (주석 40 참조)

2-2-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의 종속기업 혹은 공동지배기업이 아니면서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시점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중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부금액에 가감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이 당기순이익(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손실)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하고, 순자산 변동이 자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연결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되 상각 또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 투자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날부터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다면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내부거래제거

연결기업과 관계기업간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잔액과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기업과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2-2-5 비연결구조화기업

2-2-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및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격	목적	활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1)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에 대한 PF 자금 대출	(1)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건설
	(2) 선박/항공기 SPC에 대한 자금 대출	(2) 선박건조/항공기 제조 및 구입 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1)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1) 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2) 신탁자산의 관리 및 운용
	(3) PEF 및 조합에 대한 투자	(3) 펀드보수의 지급 및 운용수익의 배분

2-2-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및 당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합 계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36,347,337	67,955,441	104,302,778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단기매매금융자산	-	403,554	403,554
매도가능금융자산	15,143	2,626,262	2,641,405
대출채권	3,707,798	810,015	4,517,813
합 계	3,722,941	3,839,831	7,562,772
제공된 신용공여			
대출약정	420,970	69,241	490,211
연결기업이 인식한 손익			
이자수익	157,924	34,755	192,679
배당수익	583	80,762	81,345
수수료수익	151	10,893	11,044
합 계	158,658	126,410	285,068

<전기 및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합 계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38,056,176	129,279,278	167,335,454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단기매매금융자산	6,686	506,528	513,214
매도가능금융자산	501	2,271,917	2,272,418
대출채권	3,000,871	829,318	3,830,189
합 계	3,008,058	3,607,763	6,615,821
제공된 신용공여			
매입약정	-	204,231	204,231
대출약정	81,130	19,188	100,318
출자약정	-	78,195	78,195
합 계	81,130	301,614	382,744
연결기업이 인식한 손익			
이자수익	77,872	-	77,872
배당수익	-	67,492	67,492
수수료수익(비용)	(838)	3,336	2,498
합 계	77,034	70,828	147,862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5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

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2-7-1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기업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3 대여금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거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연결기업은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 (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의 재분류

연결기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연결기업이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 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2-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 중 연결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연결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

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총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2-26 참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건축물	정액법	20
비품	정률법	4
차량운반구	정률법	4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선박	정액법	15~25

2-12 정부보조금

연결기업은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 5년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3-1 취득한 사업의 현재가치(VOBA ; Value Of Business Acquired)

연결기업은 보험회사와의 사업결합시, 취득한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액과 피인수회사의 회계정책에 근거한 장부가액의 차이를 '취득한 사업의 가치 (Value Of Business Acquired)'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사업의 가치는 취득일 시점에 존재하는 장기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이익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취득일시점의 제반 계리적 가정치와 경제적 가정치를 적용하여 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보험기간이라는 유한의 내용연수를 가지므로 동 기간동안 수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상각하게 됩니다.

2-14 재보험자산

연결기업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구상채권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신계약비

연결기업은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실제신계약비가 표준계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표준계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계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계약의 분류

연결기업은 계약당사자 일방(연결기업)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최초 인식시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기간동안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시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이후 보험위험이 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해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0 보험계약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2 지급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4 계약자배당준비금

연결기업은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기업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연결기업은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20-7 보증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8 계약자지분조정

종속기업 중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과 금융자산 재분류시 발생한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6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분석기준의 상품별 손익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1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연결기업 보유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산정하여 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보증준비금으로 하고, 평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은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여,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확정형 유배당보험, 금리확정형 무배당보험, 금리연동형 유배당보험, 금리연동형 무배당보험 및 변액보험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할인율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생명보험간 부족·잉여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이익률로 할인하나,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2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기업은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기업은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복구충당부채

연결기업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7 확정급여부채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채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연결기업이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기업이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가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연결모법인인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특수목적기업 제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9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법 제10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 및 투자계약부채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 및 부채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총액기준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로부터 일시적으로 공여 받거나 공여한 자금을 특별계정미지급금 또는 특별계정미수금의 과목으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실적배당형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 및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및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0 자본

2-30-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0-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0-3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30-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연결기업이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30-5 비상위험준비금

연결기업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9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0-6 대손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1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32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 1 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33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연결기업은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 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 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연결기업이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연결기업이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다.

2-3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기업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연결기업은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기업이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수수료수익

연결기업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6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영업부문 정보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 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동부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외 5개 일반종속기업, 54개 특수목적기업을 손해보험부문으로,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및 동부캐피탈주식회사를 각각 생명보험부문 및 할부금융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37-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순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영업수익:	14,712,097	2,370,483	8,567	(23,983)	17,067,164
보험관련수익	12,479,099	1,321,815	-	(439)	13,800,475
금융상품관련수익	1,930,824	729,266	8,567	(20,740)	2,647,917
기타수익	230,378	158,413	-	(2,804)	385,987
특별계정수익	71,796	160,989	-	-	232,785
영업비용:	14,027,803	2,318,154	7,363	(12,237)	16,341,083
보험관련비용	10,471,113	1,377,448	-	-	11,848,561
사업비 등	2,316,344	366,373	3,117	(47,183)	2,638,651
금융상품관련비용	854,472	406,336	3,591	1,652	1,266,051
기타비용	314,078	7,008	655	33,294	355,035
특별계정비용	71,796	160,989	-	-	232,785
영업손익	684,294	52,329	1,204	(11,746)	726,081
영업외손익	(20,406)	(2,053)	4	63	(22,392)
법인세비용(혜택)	160,436	11,707	398	(2,631)	169,910
부문순이익	503,452	38,569	810	(9,052)	533,779

<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영업수익:	13,876,588	2,121,583	3,017	(44,949)	15,956,239
보험관련수익	11,885,725	1,265,754	-	(260)	13,151,219
금융상품관련수익	1,721,215	624,523	3,009	(42,753)	2,305,994
기타수익	227,855	137,696	8	(1,936)	363,623
특별계정수익	41,793	93,610	-	-	135,403
영업비용:	13,358,231	2,059,925	4,233	(32,370)	15,390,019
보험관련비용	10,142,131	1,320,165	-	-	11,462,296
사업비 등	2,130,294	316,607	-	(67,534)	2,379,367
금융상품관련비용	742,831	313,317	2,720	(5,447)	1,053,421
기타비용	301,182	16,227	1,513	40,611	359,533
특별계정비용	41,793	93,609	-	-	135,402
영업손익	518,357	61,658	(1,216)	(12,579)	566,220
영업외손익	(18,728)	(10,225)	(852)	9,109	(20,696)
법인세비용(혜택)	116,776	1,582	(371)	(2,906)	115,081
부문순이익	382,853	49,851	(1,697)	(564)	430,443

2-37-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외부고객 및 부문간 거래로부터의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14,708,178	2,370,483	8,567	(20,064)	17,067,164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3,919	-	-	(3,919)	-
합 계	14,712,097	2,370,483	8,567	(23,983)	17,067,164

<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13,873,444	2,121,583	3,017	(41,805)	15,956,239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3,144	-	-	(3,144)	-
합 계	13,876,588	2,121,583	3,017	(44,949)	15,956,239

2-37-3 당기 및 전기 중 부문영업이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지분법관련손실(이익)	(615)	-	-	-	(615)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97,830	6,888	160	33,295	138,173

<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할부금융부문	조 정	합 계
지분법관련손실(이익)	(379)	-	-	-	(379)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104,909	8,225	51	40,611	153,796

2-38 재무제표의 승인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2017년 3월 17일자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2-39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39-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제정 기준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율규제 대상인 가격이나 요율로 공급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규제이연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계정잔액의 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게 하는 요율규제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39-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 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됩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 - 생산용식물

개정 기준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변경합니다. 개정 기준서에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가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생산용식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성숙전에는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하고 성숙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또한 생산용식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이며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용식물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과 정부지원의 공시'를 적용합니다. 동 기준서는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연결기업은 생산용식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 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과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개정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투자기업 예외사항의 적용에서 생기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예외가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중간지배기업)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동 종속기업을 그 지배기업인 투자기업이 연결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종속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대한 개정 기준서는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할 때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

기업이 그 종속기업 지분에 대하여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 건설계약 공시 추가

개정 기준서는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에는 건설계약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공시사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9 2012-2014 연차개선

당기부터 연결기업이 적용한 2012-2014 연차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일반적으로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통해 처분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하거나 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가) 관리용역계약

동 개정사항은 수수료가 포함된 관리용역계약은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공시사항이 요구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 및 관리용역 계약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리용역계약이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평가는 과거 사건을 소

급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공시 규정은 기업이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이전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계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사항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

동 개정사항은 상계 관련 공시사항은 해당 공시사항이 직전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중간재무제표에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동 개정사항은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 여부는 국가시장이나 지역시장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통화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통화로 표시된 국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중간재무제표 또는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 공시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 있는 다른 정보는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결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및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하여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결정은 유의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 판단시 동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를 하회하는 기간 및 정도와 영업성과, 기술의 변화 및 영업·투자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단기사업전망과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된 공정가치의 감소 금액이 유의적(30% 이상)이거나 그 하락이 장기간(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자본으로 인식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누적 공정가치 평가액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3 대출채권의 손상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개별 및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의 산출시 차주의 영업 및 담보를 고려하여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대손충당금의 산출 시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기초한 통계적인 방식으로 부도율, 손실발현기간 및 부도시 손실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4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연결기업은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유중인 보험계약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등의 현금유입액과 보험금, 환급금, 적립금, 사업비 등의 현금유출액의 합리적인 예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투자수익률, 위험률, 해약률, 사업비율은 과거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영업정책 등이 반영된 장래의 추세를 고려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연결기업의 과거 운용자산실적에 미래추세, 연결기업의 향후 투자전략 등 미래전망이 반영된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사용합니다.

3-5 확정급여부채의 추정

연결기업이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리적인 가정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할인율, 향후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이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은 연결기업의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추세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대상 기간이 장기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6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

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7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8 복구충당부채

연결기업은 임차점포시설물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점포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3-9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재분류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보유의도 및 능력에 변화가 있어 당기 중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주석 21. 만기보유 금융자산 참조)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4호(Amendments to IFRS 4)에서는 보험회사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장 먼저 종료되는 회계연도말 현재 IFRS 9을 적용

한 사실이 없으면서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IFRS 9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란 보험과 관련된 부채(IFRS 4 적용범위에 있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채, IAS 39에 의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파생투자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채 및 이러한 계약들을 발행하거나 당해 계약들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이 총 부채 장부가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 이하이면서 비보험 활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가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연결기업은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안정화의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재무영향분석단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4-1-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1-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 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1-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섯 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준서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다섯 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 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현행 수익인식과 관련된 모든 현행 기준서를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완전 소급 적용 방법과 변형된 소급 적용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정해진 시행일에 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결기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 화재, 해상 등의 손해보험업 및 관련 재보험사업과 자산운용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영업수익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인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적용대상인 금융상품과 관련된 수익은 개정된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당기 중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금융상품과 관련된 수익은 각각 14,326,798백만원 및 2,647,917백만원으로, 각각 영업수익의 83.9% 및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정된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대상인 수익은 기타수익 92,449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의 0.5%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개정된 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이 종료되는 대로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결기업은 2017년 4분기까지 개정된 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공시개선

개정 기준서는 공시개선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적용시 전기 정보를 비교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연결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개정 기준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최초 적용 시 비교표시 기간의 기초 자본의 변동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을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 분류와 측정

개정기준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
-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 처리

개정 기준서 적용 시 연결기업은 과거기간에 대한 재작성을 하지 않고 동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요구되나 세 가지 개정된 모든 사항을 적용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 (2017년 3월 9일 內)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준>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0 기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49 기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0 기 기말	제 49 기 기말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628,960,583,532	1,333,205,572,076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94,496,955,972	913,500,220,892
3. 매도가능금융자산	17,828,683,270,050	12,683,119,871,988
4. 만기보유금융자산	-	2,068,688,708,560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9,008,406,073,587	7,914,282,187,960

과 목	제 50 기 기말	제 49 기 기말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4,202,881,993	5,780,295,553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644,385,675,785	609,139,722,115
8. 유형자산	330,719,707,656	334,405,820,235
9. 투자부동산	831,144,645,722	837,257,201,348
10. 무형자산	113,172,634,891	146,984,025,924
11. 재보험자산	725,485,965,261	752,773,714,192
12. 기타자산	1,742,275,279,937	1,843,390,930,057
13. 특별계정자산	1,656,661,233,286	1,120,269,587,306
자 산 총 계	34,208,594,907,672	30,562,797,858,206
부 채		
1. 보험계약부채	26,991,955,706,759	24,460,478,362,649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3,948,120,000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265,672,853,304	133,297,476,302
4. 확정급여부채	6,743,660,702	14,988,728,443
5. 기타부채	588,125,110,383	597,928,436,503
6. 이연법인세부채	288,543,314,265	290,412,172,385
7. 당기법인세부채	63,080,322,804	34,446,401,731
8. 특별계정부채	2,040,549,833,879	1,344,647,214,919
부 채 총 계	30,244,670,802,096	26,880,146,912,932
자 본		
1. 자본금	35,400,000,000	35,400,000,000
2. 자본잉여금	37,912,781,518	37,912,781,518
3. 자본조정	(29,655,475,800)	(29,655,475,8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17,451,766,470	608,237,132,466
5. 이익잉여금	3,402,815,033,388	3,030,756,507,090
(대손준비금 적립액)	(40,783,351,779)	(33,643,566,068)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702,064,321,767)	(642,073,297,158)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4,234,556,501)	(7,139,785,711)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69,296,339,329)	(59,991,024,609)
자 본 총 계	3,963,924,105,576	3,682,650,945,27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4,208,594,907,672	30,562,797,858,206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0 기	제 49 기
영업수익	14,381,346,305,591	13,690,360,509,893
1. 보험료수익	12,006,370,419,464	11,447,416,033,232
2. 재보험금수익	473,967,623,792	439,251,882,144
3. 이자수익	722,444,227,307	686,330,786,167
4. 금융상품투자수익	430,300,859,506	394,535,745,074
5. 외환거래이익	259,376,564,270	254,849,768,855
6. 수수료수익	11,667,551,740	9,988,075,544
7. 배당금수익	235,221,143,206	244,307,661,037
8. 기타수익	170,201,476,248	171,887,641,820
9. 특별계정수익	71,796,440,058	41,792,916,020
영업비용	13,750,137,000,557	13,130,192,150,051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2,552,108,927,685	2,661,439,847,362
2. 보험금비용	4,334,255,006,834	3,934,753,175,339
3. 환급금비용	2,884,471,415,242	2,818,302,805,945
4. 배당금비용	3,481,766,830	3,210,947,941
5. 손해조사비	297,692,371,073	260,110,997,197
6. 재보험료비용	694,344,523,018	722,252,871,320
7. 사업비	1,232,312,562,761	1,144,776,656,000
8. 신계약비상각비	914,567,278,155	835,325,688,707
9. 구상손실	2,451,301,079	2,171,833,626
10. 이자비용	1,277,322,760	1,719,999,614
11. 금융상품투자비용	543,919,810,698	517,379,185,218
12. 대손상각비	16,407,163,048	14,664,038,420
13. 외환거래손실	65,913,304,194	30,543,513,752
14. 자산관리비	69,372,418,707	59,484,918,944
15. 부동산관리비	8,656,523,891	14,203,350,208
16. 기타비용	57,108,864,524	68,059,404,438
17. 특별계정비용	71,796,440,058	41,792,916,020
영업이익	631,209,305,034	560,168,359,842
영업외수익	8,484,872,398	3,298,130,022
영업외비용	19,238,107,024	24,798,441,326

과 목	제 50 기	제 49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20,456,070,408	538,668,048,538
법인세비용	150,285,117,110	125,996,172,553
당기순이익	470,170,953,298	412,671,875,985
기타포괄손익	(90,785,365,996)	(1,262,838,17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77,451,765,034)	(15,322,379,26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3,252,218,804	(451,434,015)
해외사업환산이익	3,324,864,833	18,862,530,371
특별계정기타포괄이익(손실)	(13,700,076,608)	963,605,678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210,607,991)	(5,315,160,946)
총포괄이익	379,385,587,302	411,409,037,806
기본및희석주당이익	7,428	6,519

자 본 변 동 표

제 5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자본총계
2015.1.1(전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609,499,970,645	2,709,867,224,105	3,363,024,500,468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412,671,875,985	412,671,875,98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15,322,379,267)	-	(15,322,379,26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451,434,015)	-	(451,434,015)
해외사업환산이익	-	-	-	18,862,530,371	-	18,862,530,371
특별계정기타포괄이익	-	-	-	963,605,678	-	963,605,678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5,315,160,946)	-	(5,315,160,946)
총포괄손익소계	-	-	-	(1,262,838,179)	412,671,875,985	411,409,037,80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91,782,593,000)	(91,782,593,000)
2015.12.31(전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608,237,132,466	3,030,756,507,090	3,682,650,945,274
2016.1.1(당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608,237,132,466	3,030,756,507,090	3,682,650,945,274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470,170,953,298	470,170,953,29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77,451,765,034)	-	(77,451,765,03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	-	3,252,218,804	-	3,252,218,804
해외사업환산이익	-	-	-	3,324,864,833	-	3,324,864,833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	-	-	-	(13,700,076,608)	-	(13,700,076,608)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6,210,607,991)	-	(6,210,607,991)
총포괄손익소계	-	-	-	(90,785,365,996)	470,170,953,298	379,385,587,30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98,112,427,000)	(98,112,427,000)
2016.12.31(당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517,451,766,470	3,402,815,033,388	3,963,924,105,57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0 기		제 49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95,122,531,543		440,194,815,565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4,951,578,245		27,522,939,580	
2. 당기순이익	470,170,953,298		412,671,875,985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457,973,156,830		415,243,237,320
1. 배당금 [보통주당 현금배당금 당기 : 1,650원(330%) 전기 : 1,550원(310%)]	104,442,261,000		98,112,427,000	
2. 비상위험준비금	69,296,339,329		59,991,024,609	
3. 대손준비금	4,234,556,501		7,139,785,711	
4. 임의적립금	280,000,000,000		250,000,000,00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7,149,374,713		24,951,578,245

현금흐름표

제 5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0 기		제 49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92,347,560,212		2,423,994,082,14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20,456,070,408		538,668,048,538	
수익 및 비용의 조정	2,555,204,817,660		2,624,007,393,387	
자산부채의 변동	(949,120,940,944)		(1,597,214,202,689)	
이자수취액	727,271,851,926		704,680,626,073	
이자지급액	(155,798,307)		(116,402,272)	
배당금수취액	233,227,367,489		247,697,383,347	
법인세납부액	(94,535,808,020)		(93,728,764,23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44,836,407,188)		(2,079,272,575,49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8,481,628,987,333)		(5,949,002,611,59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5,555,349,240,307		4,481,760,605,625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13,632,001,850)		(361,782,584,37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		13,820,077,69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37,334,729,175)		(138,496,631,44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42,040,308,270)		(66,948,519,780)	
유형자산의 취득	(13,429,848,271)		(49,769,921,017)	
유형자산의 처분	1,036,776,834		-	
무형자산의 취득	(13,083,850,341)		(4,898,702,981)	
무형자산의 처분	77,500,000		93,5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8,647,003,958)		(14,093,287,382)	
임차보증금의 감소	8,824,774,169		10,268,271,371	
복구공사로 인한 현금 유출액	(327,969,300)		(222,771,6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6,876,667,231)		(85,640,206,852)
임대보증금의 증가	18,826,605,605		10,022,475,908	
임대보증금의 감소	(17,590,845,836)		(3,880,089,760)	
배당금의 지급	(98,112,427,000)		(91,782,593,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49,365,514,207)		259,081,299,803
환율변동 효과		10,733,810,369		4,557,665,664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24,296,334,832		160,657,369,365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85,664,630,994		424,296,334,832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 회사의 개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당사")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8개, 사업단 58개, 보상사무소 13개, 지점 372개의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1973년 6월 28일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김준기	2,104	5.94	2,104	5.94
김남호	3,190	9.01	3,190	9.01
김주원	1,115	3.15	1,115	3.15
동부문화재단	1,770	5.00	1,770	5.00
동부화재해상보험(자기주식)	3,751	10.60	3,751	10.60
소액주주	23,470	66.30	23,470	66.30
합 계	35,400	100.00	35,4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매도 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위험 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피투자기업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범주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5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2-7-1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

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3 대여금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거나 변동

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당사는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의 재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 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2-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 중 당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

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 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2-26)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건축물	정액법	20
공기구비품	정률법	4
차량운반구	정률법	4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

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건축물	정액법	20
선박	정액법	15

2-12 정부보조금

당사는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 5년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4 재보험자산

당사는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 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절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구상채권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 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신계약비

당사는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실제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해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

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

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당사)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 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당사가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기간동안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시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이후 보험위험이 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해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0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2 지급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4 계약자배당준비금

당사는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당사는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당사는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

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21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당사 보유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산정하여 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하고, 평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여,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할인율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간 부족·잉여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이익률로 할인하나,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2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

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7 확정급여부채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특수목적기업 제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

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9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

당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 및 투자계약부채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 및 부채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총액기준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로부터 일시적으로 공여받거나 공여한 자금을 특별계정미지급금 또는 특별계정미수금의 과목으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및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0 자본

2-30-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0-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0-3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30-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당사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30-5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 보험료에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9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0-6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32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33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당사는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당사가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당사가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3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

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수수료수익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6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이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38 재무제표의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3월 17일자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2-39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39-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제정 기준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율규제 대상인 가격이나 요율로 공급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규제이연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계정잔액의 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게 하는 요율규제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39-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 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됩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

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당사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 - 생산용식물

개정 기준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변경합니다. 개정 기준서에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가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생산용식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성숙전에는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하고 성숙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또한 생산용식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이며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용식물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과 정부지원의 공시'를 적용합니다. 동 기준서는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당사는 생산용식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과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개정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투자기업 예외사항의 적용에서 생기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예외가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중간지배기업)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동 종속기업을 그 지배기업인 투자기업이 연결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종속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대한 개정 기준서는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할 때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그 종속기업 지분에 대하여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당사는 예외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 건설계약 공시 추가

개정 기준서는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는 건설계약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공시사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9 2012-2014 연차개선

당기부터 당사가 적용한 2012-2014 연차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일반적으로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통해 처분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하거나 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가) 관리용역계약

동 개정사항은 수수료가 포함된 관리용역계약은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공시사항이 요구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 및 관리용역 계약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리용역계약이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평가는 과거 사건을 소급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공시 규정은 기업이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이전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계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사항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

동 개정사항은 상계 관련 공시사항은 해당 공시사항이 직전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중간재무제표에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동 개정사항은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 여부는 국가시장이나 지역시장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통화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통화로 표시된 국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중간재무제표 또는 다른 보고서 (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 공시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 있는 다른 정보는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당사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결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및 옵션가

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하여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결정은 유의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 판단시 동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를 하회하는 기간 및 정도와 영업성과, 기술의 변화 및 영업·투자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단기사업전망과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된 공정가치의 감소 금액이 유의적(30% 이상)이거나 그 하락이 장기간(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자본으로 인식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누적 공정가치 평가액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3 대출채권의 손상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별 및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의 산출시 차주의 영업 및 담보를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대손충당금의 산출시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기초한 통계적인 방식으로 부도율, 손실발현기간 및 부도시 손실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4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당사는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중인 보험계약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등의 현금유입액과 보험금, 환급금, 적립금, 사업비 등의 현금유출액의 합리적인 예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투자수익률, 위험률, 해약률, 사업비율은 과거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영업정책 등이 반영된 장래의 추세를 고려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당사의 과거 운용자산실적에 미래추세, 당사의 향후 투자전략 등 미래전망이 반영된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사용합니다.

3-5 확정급여부채의 추정

당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리적인 가정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할인율, 향후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급여증가율, 사망률 및 퇴사율 등은 당사의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추세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대상 기간이 장기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6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7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8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점포시설물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점포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3-9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재분류

당사의 경영진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보유의도 및 능력에 변화가 있어 당기 중 만기 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주석 21. 만기보유금융 자산 참조)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4호(Amendments to IFRS 4)에서는 보험회사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장 먼저 종료되는 회계연도말 현재 IFRS 9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면서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IFRS 9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지배적인 경우란 보험과 관련된 부채(IFRS 4 적용범위에 있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채, IAS 39에 의해 당기 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파생투자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채 및 이러한 계약들을 발행하거나 당해 계약들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발생되는 부채)의 장부가액이 총 부채 장부가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 이하이면서 비보험 활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가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사는 개정된 국제회계기준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및시스

탐안정화의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재무영향분석단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1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4-1-2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

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1-3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

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1-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섯 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준서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다섯 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현행 수익인식과 관련된 모든 현행 기준서를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완전 소급 적용 방법과 변형된 소급 적용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해진 시행일에 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 화재, 해상 등의 손해보험업 및 관련 재보험사업과 자산운용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영업수익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인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적용대상인 금융상품과 관련된 수익은 개정된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당기 중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금융상품과 관련된 수익은 각각 12,688,045백만원 및 1,659,011백만원으로, 각각 영업수익의 88.3% 및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정된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대상인 수익은 기타수익 34,290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의 0.2%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개정된 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이 종료되는 대로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 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7년 4분기까지 개정된 기준서 제 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4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공시개선

개정 기준서는 공시개선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적용시 전기 정보를 비교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개정 기준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최초 적용 시 비교표시 기간의 기초 자본의 변동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을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 분류와 측정

개정기준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
-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 적용 시 당사는 과거기간에 대한 재작성을 하지 않고 동 기준서를 적용

하도록 요구되나 세 가지 개정된 모든 사항을 적용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2017년 3월 9일 內)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5조의2 (사외이사의 자격 조건) ① 회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 제⑤항 후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제25조의2 (사외이사의 자격 조건) < 삭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반영 - 근거법규 변경 반영(「보험업법」 등 → 「지배구조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8.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p>1.보험업법 제13조 제①항 각호 또는 제15조 제④항 제6호 내지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2.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제④항 및 제⑥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3.최대주주</p> <p>4.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p> <p>5.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p> <p>6.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p>	<p>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p> <p>2.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p> <p>3.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p> <p>4.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p> <p>5.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기업의 상근 임직원</p> <p>6.회사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p> <p>7.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년 이상인 사람</p> <p>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p>	
<p>제26조 (이사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p> <p>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제26조 (이사의 임기)</p> <p>① ----- -----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② (좌 동)</p>	<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반영</p> <p>- 정관 내 기반영 조문 삭제 (제25조의2 제1항 제7호)</p>
<p>제 28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p> <p>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 29조 (이사의 직무)</p> <p>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의 순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8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p> <p>----- ----- -----, 상무 ----- -----.</p> <p>제 29조 (이사의 직무)</p> <p>① (좌 동)</p> <p>② ----- ----- 상무----- -----자----- -----.</p>	<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표준정관 제34조 반영</p> <p>-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명칭 명확화</p>
<p>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p>	<p>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 -----, 위원 중</p>	<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6조 반영</p> <p>- 근거법령 명확화(「상법</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사 아닌 위원은 상법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 ⑦ (생략)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 → 「지배구조법」)
< 신 설 >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승우	1952.10.13	사외이사	없음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김성국	1950.11.16	사외이사	없음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박상용	1954.02.21	사외이사	없음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김영만	1954.11.08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4)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승우	삼성증권 사외이사	-(前)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前)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前) 예금보험공사 사장	없음
김성국	동부화재 사외이사	-(前) 재무부 보험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前) 한국증권금융(주) 부사장 -(前) M&A신용정보 대표이사	없음
		-(前) 경제기획원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상용	법무법인 율촌 고문	-(前)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前)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없음
김영만	동부화재 경영지원실장 (CFO)	-(前)동부화재 상품개발팀장 -(前)동부화재 기획관리팀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이사의 선임 관련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사외이사 2명 (이승우, 김성국 후보자)

- 사내이사 1명 (김영만 후보자)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박상용 후보자)

(※ 상기 후보자 중 박상용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분리선임할 예정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승우	1952.10.13	사외이사	없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김성국	1950.11.16	사외이사	없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박상용	1954.02.21	사외이사	없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승우	삼성증권 사외이사	-(前)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前)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前)예금보험공사 사장	없음
김성국	동부화재 사외이사	-(前)재무부 보험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前)한국증권금융(주) 부사장 -(前)IBK신용정보 대표이사	없음
박상용	법무법인 율촌 고문	-(前)경제기획원 -(前)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前)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관련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박상용 후보자)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명 (이승우, 김성국 후보자)

(※ 상기 후보자 중 박상용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분리선임할 예정임)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3)	5(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0억원	60억원